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유 재 목 의원 등 8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3. 제안이유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이 우수하고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질공원에 대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질공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질공원 관리·감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충청북도의 생태환경을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계적 명소로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화를 위한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도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충청북도 일원의 지질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 인프라 등을 융합한 생태관광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토대 마련 등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근거하여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보전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도록 지질공원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업무추진을 위한 도, 시·군, 민간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2.10.31.~'22.11. 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 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도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토대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